

감정평가서

의뢰인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조성권

건명 : 진경수 소유물건 (2025타경583)

번호 : RB251215-10-3101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165, 2층
TEL.(053)614-0999 FAX.(053)616-5995

(선박)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지사장 박 종 림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술평역사천삼백이만팔천이백사십원정(₩143,028,24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조성권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진경수 (2025타경583)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5. 12. 22	2025. 12. 19, 2025. 12. 22	2026. 01. 15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원)
선박	1척	선박	1척	-	53,028,240
제시외 어업허가권	(2식)	어업허가권	2식	일괄	90,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43,028,24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구룡포항 부두” 내에 정박 중인 동력선 성원호로서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을 하는 FRP 어선(6.33톤) “성원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건의 평가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및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12월 22일로 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19일, 22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5. 관련공부 등

본건은 귀 제시목록, 어선원부, 확인 및 사실증명원, 어업허가대장 등에 의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등

1.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2.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3. 그 밖의 사항

- 1) 본건 선박(어선)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항 부두” 내에 정박중이며, 동장소에서 실사하였음.
- 2) 본건 선박(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선박의장품 중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상의 기호(4,9)는 소재불명이고, 기호(1) 및 기타 구조물, 부대설비 등은 선박의 부대시설로서 선체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기호(2,3,5,6)은 선주가 탈거보관 중으로서 본건 선박 감수보존업체에서 제시한 사진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일괄 경매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3) 본건 선박(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 및 의장품 등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본건 선박(어선)은 포항시에 확인결과 현재 어업허가(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를 득한 상태이므로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포함) 또는 임차한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어선 및 어업허가가 일체로 거래되나, 어선 또는 어업허가만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박의 어업허가에 대하여 어업허가권으로 별도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일괄 경매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감정평가액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 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및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음.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 할 때에 거래사래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 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 할 때에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 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격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본건 선박(어선)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20조제3항에 의거 선체의 선종, 선질, 선형, 톤수, 건조상태 및 관리상태,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성능, 의장품의 형식,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체 및 기관, 보조기관, 의장품별 원가법으로 평가하였고 감가수정은 정률법에 의하되, 일부 의장품은 제작일자 미상이고 선체는 외형상 각부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3) 어업허가권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조업의 경우 수익자료의 포착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조업상황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많은 반면 어업허가권의 가치가 어업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일정하게 형성되는 점을 참작하여 방매사례, 호가수준 및 평가사례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하였음.
- 4) 본건 선박 및 어업허가권은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가. 선박(어선)의 개요

1) 감정평가대상 선박(어선)의 개요

기 호	선박 명칭	선 질	어선 번호	G/T	N/T	DWT	추진기	진수일자	조선자
1	동력선 성원호	FRP	9909025 -6468902	6.33	-	-	나선일체식 추진기 × 1기	1999.09.07	대성FRP 조선소
어선의 종류(용도)				길이	너비 (M)	깊이 (M)	Main Engine (PS*RPM)	Engine Maker /Date	
동력선(어선)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11.60	3.10	0.98	360 * 2,000	두산인프라코어 /2015.06.15	

2) 선체의 현황

본건 선체는 전라남도 완도군 “대성FRP조선소”에서 FRP로 건조된 동력선(어선)으로서 1999년 09월 07일에 진수되었으으며,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시됨.

3) 기관의 현황

본선에 설치된 주기관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360PS*2,000RPM 선박용디젤 기관1기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외형상 각부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시됨.

4) 보조기관의 현황

본선은 보조기관이 없음.

5) 선체의 현황

후첨 “의장품 평가명세표”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선체의 평가

1) 어선의 건조원가

출처[선박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기준시점:2023.01.01.)]

업종	톤	선질	건조원가
외골이 기선 저인망	70톤급	강	1,375,000,000
쌍골이 기선 저인망	120톤급	강	2,767,525,000
동해구 기저(트롤)	50톤급	강	993,397,000
2대형트롤	130톤급	강	2,774,992,000
대형선망(본선)	129톤급	강	18,828,450,000
근해채낚기	70톤급	강	1,582,537,000
	50톤급	FRP	1,050,000,000
	24톤급	FRP	750,000,000
근해자망	50톤급	강	905,107,000
	50톤급	FRP	750,000,000
근해안강망	70톤급	강	1,528,267,000
	24톤급	FRP	750,000,000
근해통발	50톤급	강	1,174,027,000
	50톤급	FRP	850,000,000

2) 톤당 건조 단가

출처[선박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기준시점:2023.01.01.)]

구분	선질	건조원가(톤)	비 고
20톤급~30톤급	FRP	25,000,000 ~ 30,000,000	선주옵선제외
30톤급~40톤급		20,000,000 ~ 25,000,000	
40톤급~50톤급		18,000,000 ~ 20,000,000	
50톤급~60톤급		16,000,000 ~ 18,000,000	
60톤급 이상		~ 16,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연안허가 어선

출처[선박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기준시점:2023.01.01.)]

구분	선질	건조원가	비고
1톤 미만	FRP	14,000,000	선주옵션제외
1톤~3톤급		14,000,000 ~ 48,000,000	
3톤~9.77톤급		48,000,000 ~ 260,000,000	
9.77톤~20톤급		260,000,000 ~ 550,000,000	

4) 업종에 따른 가중치

출처[선박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기준시점:2023.01.01.)]

구분	선질	건조원가(톤)	비고
채낚기	FRP	기준 대비 20 ~ 30% 상향	구체적 옵션에 따라 차등 적용
자망		기준금액과 유사	
안강망		기준금액과 유사	
통발		기준 대비 10 ~ 20% 상향	

5) 평가사례 선체의 재조달단가

명칭	총톤수 (G/T)	선질	용도	재조달원가	진수일	평가목적	기준시점
제2명신호	6.30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28,000,000	2009.06.25	경매	2025.08.26
동환호	4.94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	26,000,000	1998.05.29	경매	2025.08.20
경진호	4.90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28,000,000	2008.10.13	경매	2025.05.1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본건 평가사례

명칭	총톤수 (G/T)	선질	용도	제조달원가	진수일	평가 목적	기준시점
성원호	6.33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22,000,000	1999.09.07	담보	2024.08.01
제2005 성광호	6.33	FRP	어선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25,000,000	1999.09.07	경매	2023.08.22

7) 제조달단가의 결정

상기 선박건조단가표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및 평가사례의 건조단가, 진수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달단가를 결정하였음.

기호	구분	총톤수 (G/T)	선질	용도	제조달원가	경제적 내용년수	비고
1	선박	6.33	FRP	동력선(어선)	26,000,000	20	-

8) 선체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하였으며, 감가수정의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였음.

기호	구분	제조달원가	내용년수	유효 경과년수	잔존 가치율	선체단가 (원/GT)	비고
1	선박	26,000,000	20	15	0.178 (5/20)	4,628,000	관찰감가 잔가율 10%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기관의 평가

1) 주기관과 보조기관의 유형별 PS당 단가

출처[선박감정평가 자료집 한국감정평가사협회(기준시점:2023.01.01.)]

구분		단가(PS당/원)	
주기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47,000 ~ 275,000
		중.저속	367,750 이하
보조기관	Marine Diesel Engine	국산고속	88,000 ~ 184,000
		외산 중.저속	169,000 ~ 250,000

2) 평가사례 기관의 재조달단가

명칭	실마력(PS)	재조달단가 (원/PS)	제작소	제조일자	평가 목적	기준시점
제2명신호	400	180,000	SCANIA	2017	경매	2025.08.26
동환호	316	180,000	-	-	경매	2025.08.20
경진호	385	170,000	현대마린공업	미상	경매	2025.05.13

3) 재조달단가의 결정

상기 주기관의 단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및 평가사례의 신조단가, 진수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조달단가를 결정하였음.

구분	재조달원가 (원/PS)	내용년수	경과년수	잔존 가치율	단가 (원/PS)	비고
주기관	180,000	20	10	0.316 (10/20)	56,000	잔가율 10%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의장품의 평가

본건 선박(어선)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장품의 자세한 내역은 후첨 “의장품 평가명세표” 를 참조하시기 바람.

마. 어업허가권 평가액 결정

1) 어업허가 내역

허가를 받은자							
성명				진경수			
사용어선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기관종류 총톤수(톤)	마력 선질	길이(m)	너비(m)	깊이(m)
본선	9909025 -6468902	성원호	선박용디젤 6.33	360 FRP	11.60	3.10	0.98
허가어업							
종류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채취물의 종류		
주어업	포항시 연안자망어업 제2024-00252호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자망	경상북도 연안 일월 01.01~12.31	계, 수산동물 (제외: -)		
그 외의 어업	포항시 연안통발어업 제2024-00156호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복합	경상북도 연안 일월 01.01~12.31	수산동물 (제외: -)		
허가기간		주요기기 및 시설		양륙항		제한조건	
2024.10.16. ~ 2028.12.31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유사선박(어선)의 어업허가권 평가사례

선박명	어선번호	총톤수 (G/T)	허가번호	조업 구역	선적항	평가금액	평가 목적	기준시점
제2명 신호	0906005 -6471102	6.30	포항연안자망어업 제2024-00128호 포항연안통발어업 제2014-00066호	경북 연안	감포항	90,000,000	경매	2025.08.26
동환호	9806007 -6461301	4.94	포항연안자망어업 제2024-00064호	경북 연안	구룡포항	80,000,000	경매	2025.08.20
경진호	0810014 -6461302	4.90	포항연안자망어업 제2024-211호 포항연안통발어업 제2024-124호	경북 연안	구룡포항	75,000,000	경매	2025.05.13

3) 어업허가권의 가격결정

본건 선박의 어업허가권은 선박매매대금에 포함되어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로서 어업의 규모, 어선종류, 어업시기 등과 매매당사자의 사정과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이 있어 객관적인 사례포착과 가격결정에 한계가 있는 바, 유사한 선박의 법원 경매 평가사례, 선박중개사이트의 시중시세 및 어선감척지침에 의거한 폐업지원 금액 등을 종합 참작하여 90,0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선박가액 결정

기호	선박명	구분	수량	단가	평가액(원)	비고
1	성원호	선체	6.33G/T	4,628,000	29,295,240	관찰감가
		주기관	360PS	56,000	20,160,000	-
		의장품	2식	-	1,720,000	관찰감가
			4식	-	1,853,000	-
			1식	-	선체에 포함	-
			2식	-	-	소재불명
		제시외 어업허가권	2식	-	90,000,000	일괄평가
합계				-	143,028,240	-

3. 그 밖의 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수량 (용량)	재조달단가	잔가율	적용단가	감정평가액(원)	비고
선체	6.33톤	26,000,000	0.178	4,628,000	29,295,240	-
주기관	360PS	180,000	0.316	56,000	20,160,000	-
의장품	6식	-	-	-	3,573,000	-
	1식	-	-	-	선체에 포함	
	2식	-	-	-	-	소재 불명
제시외 어업허가권	2식	-	-	-	90,000,000	일괄 평가
합 계					143,028,24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제반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선박감정평가명세표

선박명칭	성원호	선박번호	9909025-6468902	선적항	포항시 구룡포읍
구분	적재용량 및 수량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단가	금액(원)		
선체	6.33 G/T	4,628,000	29,295,240	26,000,000 x 0.178 (5/20)	
기관	360 PS	56,000	20,160,000	180,000 x 0.316 (10/20)	
보조기관	- 식	-	-	-	
의장품	9 식	-	3,573,000	의장품명세표참조	
합계			₩53,028,240	잔가율(선체:10%, 기관:10%)	

선박의 내용

선	종류	용도	등급	선질	선형	총톤수	순톤수	적화톤수	주요치수	
	동력선	어선(연안 자망어업)	--		FRP	-	6.33	-	-	길이
									너비	3.10 m
									깊이	0.98 m
체	선	창	객실	승무원실	조선지	조선소	건년월	조일	수일	비고
	-	-		어선원2명	전라남도 완도군	대성FRP 조선소	-	1999.09.07		
기	종류	실마력	공칭마력	형식	기통수	회전수	기통경	행정	제작소	제조일자 및 번호
	DIESEL ENGINE	360PS (264kw)	-	-	-	2000rpm	-	-	두산인프라 코어	2015.06.15 DL11 MWM03 653065
관	속력	추진기의 종류 및 수량		보조기계 및 기관의 종류와 수량			비고			
	-	나선일체식 추진기1기		-			기관에 감속기 등 동력전달장치 포함.			

선박의장품 평가명세표

기 호	명 칭 (종 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자 제 작 번 호 제 작 (취 득) 일 자 수 입 신 고 일 자	수 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원)	
1	조타기 등	국산 미상	1식	-	선체에 포함평가	
2	레이더 (MD-3642F)	KODEN 미상	1식	-	860,000	4,000,000 x0.215(5/15) 관찰감가 선주탈거보관
3	어탐기 (HDS10)	LOWRANCE 미상	1식	-	860,000	4,000,000 x0.215(5/15) 관찰감가 선주탈거보관
4	GPS Plotter (NAVIS-2600)	삼영 미상	1식	-		-소재불명
5	선박자동식별장치 (AIS-50N)	삼영 2017.05	1식	-	579,000	1,700,000 x0.341(8/15) 선주탈거보관
6	송수신장치 (ST-2700)	삼영 2014.04	1식	-	203,000	1,100,000 x0.185(4/15) 선주탈거보관
7	VHF 송수신장치 (STR-6000B)	삼영 2018.05	1식	-	375,000	1,100,000 x0.341(8/15)
8	해상용네비게이션 (GMT-EYENAV13.0)	(주)지엠티 2020.11	1식	-	696,000	1,500,000 x0.464(10/15)
9	4단 양망기 기타설비일체	국산 미상	1식	-		-소재불명
합 계					₩3,573,000.-	
< 이 하 여 백 >						

어업허가권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어업허가권의 표시	어장의 면적		평가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	금액	
1	제시외어업허가권 [허가어업] 종류 : 주어업 어업의종류: 연안자망어업 허가번호 : 포항시 연안자망어업 제2024-00252호 어업의 시기 : 01.01 ~ 12.31 허가기간 : 2024. 10. 16.~2028. 12.31. 포획·채취물의 종류 : 계, 수산동물 (제외 : -)	1식	1식	-	90,000,000	일괄 평가
2	종류 : 그 외의 어업 어업의종류 : 연안복합어업 허가번호 : 포항시 연안복합어업 제2024-00156호 어업의 시기 : 01.01 ~ 12.31 허가기간 : 2024. 10. 16.~2028. 12.31. 포획·채취물의 종류 : 수산동물 (제외: -) [사용어선] 어선의 명칭 : 성원호 종류 : 본선 어선번호 : 9909025-10-6468902 기관의종류 : 선박용디젤 총톤수: 6.33톤 선질 : FRP	1식	1식			
합 계					₩90,000,000.-	
	이	하	여	백		

선박감정평가요항표

- | | |
|------------|------------|
| 1. 선체의 현황 | 4. 운항사항 |
| 2. 기관의 현황 | 5. 기타 참고사항 |
| 3. 의장품의 현황 | |

1. 선체의 현황

본건 선박 "성원호"는 6.33G/T, FRP 선질의 동력선(어선, 포항시연안자망어업, 포항시 연안복합어업)으로서 1999년 09월 07일자로 진수된 선박으로 선수로부터 갑판, 어창실, 조타실, 기관실, 선원휴게실(선실), 선미까지로 구획된 어선으로 기준시점일 현재 현상 및 관리상태 등 보통임.

2. 기관의 현황

본건 선박 "성원호"에 거치된 기관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한 360PS*2,000RPM 선박용 디젤기관 1기로서, 기준시점일 현재 외형상 각부의 현상 및 상태는 보통임.

3. 의장품의 현황

본건 선박 "성원호"에 설치된 의장품은 운항 등에 필요한 기기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임.

4. 운항사항

본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득한 어선으로 선적항은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으로 구체적인 운항사항은 미상임.

5. 기타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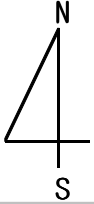
- (1) 본건 선박 "성원호"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항' 내에 정박중에 있으며, 동장소에서 실사하였음.

선박감정평가요항표

- | | |
|------------|------------|
| 1. 선체의 현황 | 4. 운항사항 |
| 2. 기관의 현황 | 5. 기타 참고사항 |
| 3. 의장품의 현황 | |

(2) 본건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은 2024년09월 08일 ~ 2029년 09월 07일까지임.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항 부두"
-----	---------------------------------------



사 진 용 지



[본선 전경(성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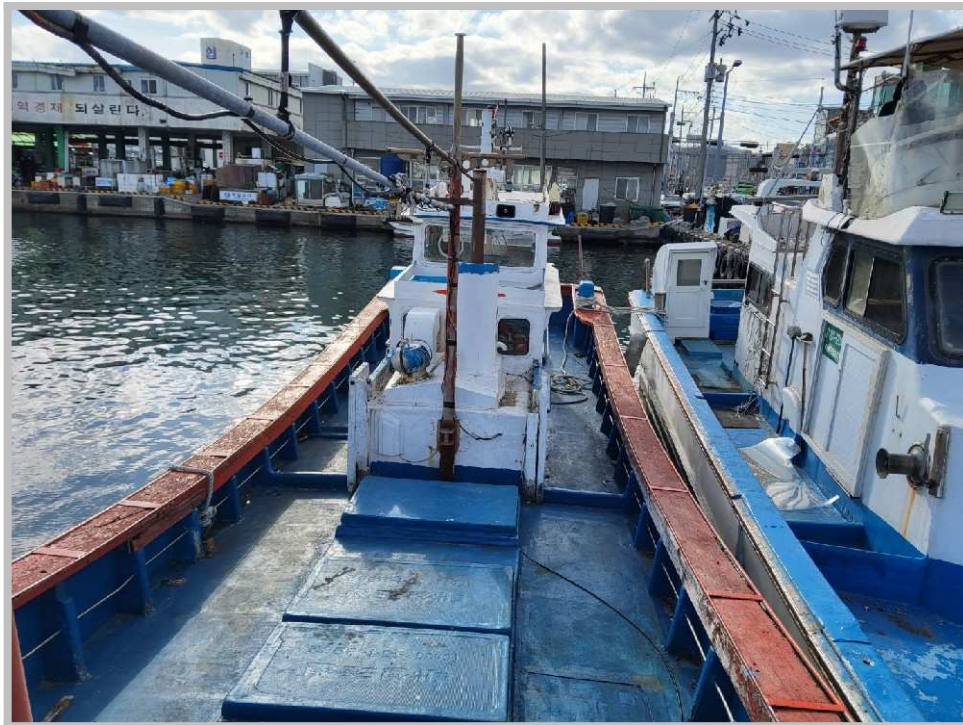


[본선 전경(성원호)]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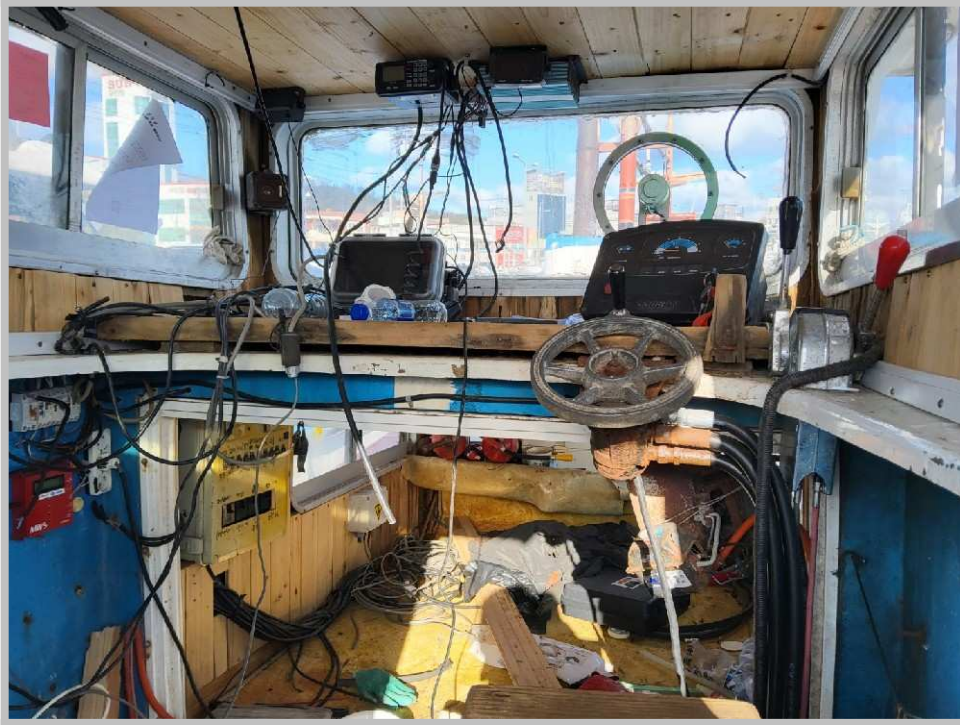


[본선 어선번호]



[본선 갑판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조타실 전경]



[본선 주기관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 1) 의장품]



[기호 2) 의장품]

사 진 용 지



[기호 3) 의장품]



[기호 5) 의장품]

사 진 용 지



[기호 6) 의장품]



[기호 7) 의장품]

사 진 용 지



[기호 8) 의장품]